
Policy and Law Report _Vol.103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9.13~ 9.26) -

September 27, 2021

법무법인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u>대외경제 이슈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개최</u> 기획재정부가 주재하고 과기부·외교부·농식품부·산업부 장관, 해수부 차관, 경제수석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대외경제 분야 이슈만을 논의하는 첫 녹실회의로서 대외경제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보다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최근 미·중 간 패권경쟁下 첨단기술 보호, 공급망 재편 등 경제 이슈에 있어서의 안보와의 연계가 심화되는 양상 - 보다 큰 틀에서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외경제전략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함 ② CPTPP* 가입 추진과 관련, 그간 추진해 온 CPTPP 4대 분야 국내 제도개선**,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결과 등을 토대로 가입 관련 진행상황과 대내외 여건 등을 종합 점검하고 이와 함께 우호적인 가입 여건 조성을 위한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함 *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위생검역	2021-09-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u>「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개발방향」 보고서 발간</u>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21.3)」 내 10대 핵심기술의 세부 개발방향 및 기술개발 전략을 담은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10대 핵심기술 개발방향」 보고서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과 함께 발간함 보고서는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 발표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내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에 대해 2050년까지의 구체적인 기술별 목표 및 중점기술 개발 방향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음 * ① 태양광·풍력, ② 수소, ③ 바이오에너지, ④ 철강·시멘트, ⑤ 석유화학, ⑥ 산업공정 고도화, ⑦ 수송효율, ⑧ 건물효율, ⑨ 디지털화, ⑩ CCUS(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10대 핵심기술 개발방향」은 총괄, 에너지 전환(태양광, 풍력, 수소, 바이오에너지), 산업 저탄소화(철강·시멘트, 석유화학, 산업공정 고도화, CCUS), 에너지 효율(수송효율, 건물효율, 디지털화)로 구성됨	2021-09-13

부처	내용	일시						
	[총괄]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탄소중립 선언 배경 및 국내외 정책 · 시장 · 산업 현황을 제공하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의 추진배경과 10대 핵심기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함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기술인 태양광, 풍력, 수소, 바이오에너지 분야의 국내외 현황, 핵심기술, 비전 · 목표 및 세부기술별 추진전략 [산업 저탄소화] 탄소집약적 구조를 가지는 국내 산업을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기술인 철강 ·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공정 고도화, CCUS 분야의 국내외 현황, 핵심기술, 비전 · 목표 및 세부기술별 추진전략 [에너지 효율] 수송효율, 건물효율, 디지털화 분야에서 고효율/친환경 에너지 기술 및 운영/관리 최적화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핵심기술의 국내외 현황, 핵심기술, 비전 · 목표 및 세부기술별 추진전략 ※ 보고서 전문은 온라인 누리집 (www.ctpp.re.kr)에서 열람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 소부장 경쟁력을 위한 뿌리산업 전환 청사진 마련 착수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12.1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뿌리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연내 뿌리산업 전환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로 「뿌리산업 전환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함 정부,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법개정에 따른 뿌리기술의 범위 확장 내용을 업계에 공유하고, 제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소부장 경쟁력 핵심 기반인 뿌리산업 전환 관련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주요산업 대응 역량 제고, 가격 경쟁력 확보, 인력난 해결, 입지 개선, 뿌리산업 전환 지원체계 강화 등 중점 논의하는 場으로 마련됨 뿌리기술의 범위 확장 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현 행</th><th>추 가</th></tr> </thead> <tbody> <tr> <td>소재</td><td>금속</td><td>세라믹, 플라스틱, 탄성소재, 탄소, 펄프</td></tr> </tbody> </table> 뿌리기술 (14개) + 기반 공정기술(6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차세대 공정기술(8개) 소재다원화 공정기술 ① 사출 · 프레스 ② 정밀가공 ③ 적층제조 ④ 산업용 필름 · 지류 공정 지능화 공정기술* ⑤ 로봇 ⑥ 센서 ⑦ 산업지능형 SW ⑧ 엔지니어링 설계 * 지능화 공정기술은 기반 공정기술과 소재다원화 공정기술 등 제조 공정기술에 활용하는 기술	구분	현 행	추 가	소재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탄성소재, 탄소, 펄프	2021-09-15
구분	현 행	추 가						
소재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탄성소재, 탄소, 펄프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공공 경제연구기관 9곳*이 참석하는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산업이 이끄는 경제 회복세 유지와 함께, 산업구조 혁신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향후 산업정책 방향 제시함 * 산업연구원, KDI, 에너지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주요 내용으로는 ① 세계 공급망 재편 속에서 공세적으로 산업·기술 주도권 확보 - 반도체·배터리·조선에 이어「디스플레이 전략」을 준비중으로 우리 핵심 주력산업들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정부가 뒷받침 -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한「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곧 발의, ‘산업 경쟁력이 국가안보’라는 인식 아래 강력한 산업정책 추진 ② 탄소중립·디지털화를 기회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본격화 -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내 발표해 한국 산업의 새로운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선제적·도전적 미래투자를 적극 지원 - 산업과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제조업 스마트 혁신을 이끌「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은 금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③ 사회적 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이끄는 포용적 산업 전환 실현 - 경제·환경·사회의 공생을 위한「K-ESG 가이드라인」연내 발표 - 산업구조 전환 수요에 맞춰, 기업 주도로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확실하게 지켜내는「산업브레인 확보 전략」도 발표할 계획	2021-09-16
방송통신 위원회	•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본격 시행 앱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이 9월 14일부터 시행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앱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의무 부과 (제22조의9제1항) ②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22조의9제2항) ③ 이용요금 결제, 환급에 관한 분쟁이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 (제45조의2제1항제6호) ④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 앱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신설 (제50조제1항제9호~11호) ※ 제22조의9 제1항 및 제2항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1-09-14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2021.9.16 시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수령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8244호, 2021. 6. 15. 공포, 9. 16. 시행)됨 이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수령 신청의 접수, 실명확인 및 대금의 수납·전달 등으로 정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해 업무방법 개선 요구 및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그리고 외화 조달구조 개선이나 외국환거래 촉진에 기여한 외국환업무취급 기관에 대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공제하는 경우 공제액의 총액이 공제하기 전 금액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고, 외환시장의 상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영에서 규정하던 공제 항목별 상한 및 외국환 거래 촉진과 관련한 공제액의 산정 방식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1-09-14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2021.9.16 시행)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사업을 중단 없이 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요청제’를 도입하고, 임시허가 전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융합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8273호, 2021. 6. 15. 공포, 9. 16. 시행)됨 이에 따라 법령정비의 요청 절차와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임시허가의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신청한 중소기업·중견기업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1-09-14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1.9.16 시행)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개편에 대비하여 첨단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첨단 투자지구*를 지정·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74호, 2021. 6. 15. 공포, 9. 16. 시행)됨 이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변경지정·지정해제의 기준 및 절차, 첨단투자지구에서의 지원 대상,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첨단투자지구: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산업 분야의 공급망 충격 등에 대응하여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분야의 제품 또는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임대료 및 부담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와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구	2021-09-14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1.9.16 시행)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 육성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려는 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268호, 2021. 6. 15. 공포, 9. 16. 시행)됨 이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도가 각각 다른 둘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1-09-14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국토 교통부	• 「<u>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u>」(2021.9.14 시행) 현행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대상, 가입 의무기간, 미가입 시 처벌 규정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부채비율 등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 보증가입이 어렵고 처벌로도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일부보증 요건 등 규정도 불분명함. 또한,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는 보증회사로부터 보증가입 자료를 취득할 근거가 없어 보증제도 관리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회사로 하여금 보증가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보증보험 가입 의무기간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로 확대하고 일부보증 시에는 임차인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에게 보증금 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가입 면제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며, 나아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불응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제한·말소하고 계약갱신 거절이 불가능한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021-09-14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u>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u>」 기후변화의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업 등 전기사용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 이행을 통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전기신사업(자)의 종류에 포함시키는 한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PPA)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97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 모집할 수 있는 소규모전력자원의 발전설비용량의 규모를 2만킬로와트 이하까지 확대 (안 제1조의3) 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공급 거부 사유 등을 규정 (안 제5조의5) ③ 전력량계 설치의 예외가 되는 발전사업자의 유형을 수정 (안 제8조) ④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9조) ⑤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단서 조항 추가 (안 제20조) ⑥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기준을 일부 수정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등록기준 신설 (안 별표 1) ※ 의견제시기간 : 9/14(화)~9/30(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전력시장과)로 제출	2021-09-1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고용 노동부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제정안」 재직 근로자에게도 간이대지급금(소액채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됨 (법률 제18042호, '21.4.13. 공포, '21.10.14. 시행 예정) 개정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시행령(안)에서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 기준을 규정하면서, 그 중 소득 기준의 세부 금액에 대해서는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따라 재직자 대지급금의 대상이 되는 임금액의 기준, 산정시점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시행령(안) 제7조의2제2호에서 재직자 대지급금의 소득요건으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을 규정 ② 이에 따라 고시 제정안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로 규정 * 시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 환산 ※ 의견제시기간 : 9/17(금)~10/7(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로 제출	2021-09-17
공정거래 위원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4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보존 대상 서류 확대 (안 제6조제1항제5의4호 및 제8호) - 개정 법률이 원사업자에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원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 -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에 관련된 서류 등도 보존하도록 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을 예방	2021-09-1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공정거래위원회	②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구체화 (안 제7조의4) - 개정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비밀유지계약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이에 비밀유지계약 의무 기재항목을 열거하고 기술자료요구서 기재사항 중 ‘기술자료 사용기간,’ ‘반환·폐기방법,’ ‘반환·폐기일’ 등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이유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비밀유지계약 의무 기재사항으로 변경 ※ 의견제시기간 : 9/14(화)~10/25(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로 제출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현재 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에 대해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에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강화 필요 주요 내용으로는 ① 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에 대해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를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강화 ②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표시하도록 개선 ※ 의견제시기간 : 9/17(금)~10/7(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로 제출	2021-09-17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에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체크카드, 신용카드 또는 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현금 인출 또는 인터넷상품권 구입을 통한 현금화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범위를 은행, 보험회사 등에 국한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과 같은 자체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이 규정하는 금융회사에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하고,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자체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안 제2조 및 제2조의4)	2021-09-1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1인)」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형 벤처캐피탈)는 대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을 의미함. 우리나라의 경우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일반주회사는 CVC 설립이 불가능하였으나, 2021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은 일반주회사의 CVC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개정법률은 일반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주식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국내 벤처투자생태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같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투자회사인 “창업기획자”가 CVC 설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일반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벤처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임 (안 제20조)	2021-09-1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0인)」 하도급 사업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경우 임금 지급 여부가 원청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청업체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할 우려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휴업수당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에 대해서만 원청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 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원청업체의 귀책사유로 도급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휴업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에 대한 지급 보증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하청업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및 제28조의2 신설)	2021-09-15
기획재정 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특히 육성이나 보호가 필요한 기술혁신, 첨단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게임산업은 차세대 핵심문화산업이며 국내외 게임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분야로서 해당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임 이에 게임 연구·인력개발비 및 게임 영상물에 대한 세액공제, 이스포츠 관련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변화하는 게임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의3 신설, 제25조의6제1항, 제104조의22 및 제104조의27 신설)	2021-09-1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0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는 등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대형 전기통신사업자들은 데이터를 자사의 시장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잠재적 경쟁사업자 출현을 견제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의 데이터 접근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음 이로 인해, 사업자 간의 데이터 접근 격차가 기업 경쟁력 격차로 이어져 스타트업이나 다른 사업자가 디지털 시장에 진입하거나 혁신을 추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며, 이용자도 자신이 제공한 데이터를 다른 대안서비스로 쉽게 이전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설비 등의 제공, 요금의 부과·징수 및 전기통신번호 안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 인적사항에 한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플랫폼 시장의 성장 등 디지털 경제의 고도화에 따른 데이터 중심의 사업모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이용자 수, 매출액, 제공 서비스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려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거나,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 시 그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여, 사업자 간 데이터 격차를 완화하면서 이용자의 서비스 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여 디지털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42조의2 신설)	2021-09-10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0인)」 현재 일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들은 직영업체 또는 공인 협력업체를 통해 자사 제품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수리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거나 수리에 필요한 부품, 장비 등을 일반 수리업체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음 또한 수리가 가능한 직영업체 등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따로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으로 수리를 받아야 하는 등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용자의 명백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매뉴얼, 장비 등의 공급·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를 위반한 것을 인지한 때에는 사실조사와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9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0조 등)	2021-09-13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u>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u>」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기존의 온·오프라인 시장을 잠식하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90% 수준에 달하는 등 시장 편중과 승자독식이 공고화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압도적인 자본력을 보유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중소 플랫폼사업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인수·합병하고 있고, 이로 인해 경쟁자 제거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와 혁신 저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부가통신사업을 관할하는 현행법 체계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제한적인 인수·합병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어,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시장 독점이 고착화되고, 가격 인상 등의 지배력 남용, 통신 분야에서의 혁신 저해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을 양수하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이에 대해 이용자 보호, 서비스 안정성 확보, 시장 경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선도국인 우리나라 ICT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다채로운 서비스 혁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2021-09-15
환경노동 위원회	• 「<u>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0인)</u>」 현행법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연속되어 다음 날의 소정근로시간의 시작 시간까지 근로자가 퇴근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규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시간의 시작 전까지만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연장근로 등과 소정근로시간이 연속되는 경우 사실상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장시간 근로를 계속하게 됨에도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의 종료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연속되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시간의 계속 근로를 최소화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56조제4항 신설)	2021-09-1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등 12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기간의 연장 결정에 건설공사발주자 뿐 아니라 도급받은 원청 하청 등도 참여하도록 하여 노동자 안전 보장과 관련해 현장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고 의사결정의 참여를 통한 책임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업이 원가절감을 통한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건설공사가 도급 하도급 등으로 진행되면서 안전관리 비용에 소홀 해질 여지가 있으므로 현재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까지 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인 등으로 확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70조 및 제72조)	2021-09-23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9/27(월)14:00	제391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 안건처리	
	9/29(수)14:00	제391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 안건처리	
상임위원회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9/28(화)~9/30(목)	제1차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세계의원회의 - 코로나19 팬데믹의 도전을 SDGs 달성 기회로	화상회의
	10/1(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57호 발간	
국회도서관	9/28(화)	제21차 「AI와 국회포럼」 개최 - 메타버스(METaverse)를 해부한다!	화상회의
	9/28(화)	「현안, 외국에선?」 제20호 발간 -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과 아프가니스탄 사태 대응 전략	
	9/28(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4호 발간 - 공공시설 내 식당에서의 채식메뉴 선택사항 의무화 관련 포르투갈과 유럽연합 입법례	
예산정책처	9/30(목)	「국가건강검진사업 평가」 발간 - 국가건강검진사업의 현황, 추진실태, 성과 등을 점검·분석 - 향후 국가건강검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선 방안 제시	
	9/30(목)	「2022년 및 중기 경제전망」 발간	
입법조사처	9/29(수)07:30	「제9회 NARS 시선과 논단」 -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환경,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ZOOM 유튜브
	9/27(월)14:00	「전문가 간담회」 - 2021년 독일 총선 전망 - 정병기 교수 (영남대학교)	온라인
	9/30(목)10:00	「전문가 간담회」 - 남북관계 변화와 국가정보기관의 역할 - 신유섭 교수 (연세대학교)	온라인
	9/30(목)14:30	「전문가 간담회」 - 우리나라 ODA 정책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 - 김태균 교수 (서울대학교) 외	온라인

[별첨1] 제391회 국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예결위	9/27(월) 10:00	결산심사소위	2020회계연도 결산 등
정무위	9/28(화) 10:00	법안심사1소위	법안 심사
	9/28(화) 14:00	법안심사2소위	법안 심사
	9/29(수) 10:00	전체회의	법안 의결 등
과방위	9/27(월) 10:00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사
	9/27(월) 13:30	전체회의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9/28(화) 10:00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사
농해수위	9/28(화) 10:00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사
	9/28(화) 14:00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사
산자위	9/27(월) 11:00	전체회의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복지위	9/27(월) 13:20	전체회의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환노위	9/27(월) 13:30	전체회의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여가위	9/28(화) 14:00	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사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9/27(월) 10:00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 동향 - 미국·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오기형, 민병덕, 이용우, 이정문 의원실	오기형TV 유튜브
9/27(월) 10:00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 4개 정당 43명 의원 공동주최	이탄희,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의원실 외	ZOOM
9/27(월) 10:30	국회 평화외교포럼 강연회 -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 초청	김경협, 윤후덕의원실, 국회 평화외교포럼 외	화상 토론회 (Webex)
9/28(화) 10:00	망분리 규제가 핀테크 산업 개발환경에 미친 영향 토론회	이용우, 홍정민 의원실	유튜브
9/28(화) 15:00	경기도 공공버스 국회토론회 - 설 자리 잃어가는 버스의 해답	강득구, 김경협, 김상희, 김영진 의원실 외	여의도 켄싱턴호텔
9/28(화) 14:30	자치경찰제 나아가야할 방향은?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진단 및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	박완주 의원실, 경찰청, 자치분권위원회 외	박완주TV 유튜브
9/30(목) 14:00	산업은행 관리체제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민형배, 배진교 의원실	유튜브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9/13(월)10:00	국회「모빌리티 포럼」3차 세미나 - 인류를 위한 모빌리티의 미래, 로봇틱스	권성동, 이원욱 의원실 국회「모빌리티 포럼」외	현대모터 스튜디오고양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을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소속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소속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소속변호사 | T. 02-316-1787 | E. yjiseo@shinkim.com |
| • 문응필 소속변호사 | T. 02-316-4047 |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소속변호사 | T. 02-316-1748 |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소속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소속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 • 박희훈 소속변호사 | T. 02-316-7917 | E. hhpark@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